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85 발의연월일: 2025. 2. 14.

발 의 자:김영진·박희승·조승래

이재정 • 한병도 • 박민규

서삼석 · 채현일 · 강유정

임호선ㆍ허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사기법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증거의 확보가 가능해져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과 같이 범죄피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청구권 행사를 불가 능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임. 특히 판례에 있어서도 범죄피해에 대해 서는 소멸시효 일반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등) 가 있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을 늘려야할 필요성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신설).

법률 제 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 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구조대상 범죄피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구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		
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			
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			
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전 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		
	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		
	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할		
	<u>수 있다.</u>		